

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

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5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」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. 2. 4.
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

1. 모집 개요

가. 모집대상 : 2025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

나. 선발인원 : 수산업경영인 8명(어업인후계자 7, 우수경영인 1)

다. 신청자격

구분	어업인후계자	우수경영인
연령	· 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 (2025.1.1. 기준)	· 만 60세 이하 (2025.1.1. 기준)
병역	· 병역필·병역면제자(여성 포함)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	· 병역필·병역면제자(여성 포함)
영어경력	·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, 경영한 지 10년 이하인 자 *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「수산업· 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	· 어업면허(허가신고)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(2025.1.1. 기준)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
어업기반	-	·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 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*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자는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

※ '19년 이전('19년 선정자 포함)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경우 어업인후계자(또는 전업경영인)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'25년도 시행지침에 따름('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시행지침에 따름)

2. 신청서 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5. 2. 4.(화) ~ 2. 28.(금)

나. 신청방법 : 방문접수 * 본인 증명을 위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
다. 접수장소 : 경기도해양수산물연구소 수산기술센터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)

라. 제출서류

구분	우수경영인	어업인후계자
필수	<p>공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 ·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· 신용조사서[별지 제2호 서식] ·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·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(과거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어업허가증 사본 ·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· 어업기반 증빙자료 · 소득 증빙자료 	<p>< 좌동 ></p> <p>*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</p>
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어승계확인서[별지 제3호 서식] 및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포함) · 특허, 컨설팅 실적 등 증빙서류 · 재직증명서(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) · HACCP, 친환경수산물 등 인증서 사본 · 국가기술자격증 등 수산 관련 자격증 사본 ·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해양수산물분야 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· 정부, 지자체, 수협 포상 관련 표창 등 사본 · 경영장부, 영어일지 ·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·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· 국외 수출 실적 확인서 · 수산업경영인 시·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·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 확인서 <p>* 이외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제출</p>	

마. 문의 : 경기도해양수산물연구소 수산기술센터(☎ 031-8008-8356)

3. 지원대상자 선정

가. 선정기준 :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선발

- 어업인후계자 : 60점 이상(120점 만점) / 우수경영인 : 120점 이상(220점 만점)
- 배정인원의 1.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나. 선정방법 : 육성자금 신청자격 및 적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경기도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명단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

※ '25.4월중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예정

다. 선정 제외대상

-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동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(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)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 선정취소('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)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(우수경영인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)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어업 경영체 미등록자

4. 육성자금 지원

가. 지원형태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)에서 용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[기준금리-대출금리(1.5~1.0% 또는 변동금리)]를 지원

나. 대출조건

- 어업인후계자 : 최대 5억원 / 연리 1.5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
- 우수경영인 : 추가 2억원 /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

다. 지원방식

- 자금 신청(지원대상자 선정일 기준)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2년 이내(2026.12.31.까지) 1회만 신청 가능하며,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

-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함
-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
-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(2026.12.31.까지)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라. 지원자금 사용용도

지원분야	사용용도	비고
어선어업	- 어선 건조 및 구입, 어선 개량 및 보수, 어구 및 장비 구입	· 중고어선의 경우 선령 무관 구입 가능(어획물 운반선 포함)
양식업	- 양식장 부지 구입(신축일 경우 최대 1.5억원 이내 지원) -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·개·보수, 양식장 구입 · 양식기자재·어장관리선(엔진) 구입, 종자 및 친어 등(해조류 포함) 구입,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	
수산물 가공 및 유통	-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(최대 1.5억원 이내 지원) - 수산물 저장·가공·판매시설 및 운반차량설비 구입 등	·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(어획)한 수산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관할 시·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
소금제조업	- 염전 부대시설 신축·개·보수, 염전 및 관리 장비 구입, 제조·가공시설 등	
기타사항	- 수산 기반 시설, 컴퓨터 구입 등	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, 지원, 사후관리, 사업실태·설문 조사,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, 어업경영기반 사항, 교육이수 시간, 경영체등록 DB,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,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
-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

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·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·도, 시·군·구(읍·면·동), 해양수산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세청,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, 대출 지원업무,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(사업관련 실태·설문조사 기관 포함)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,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, 수산업경영인 관리시스템 등록·통계 활용, 사업실태·설문 조사, 각종 안내문 발송 등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지, 연락처(휴대폰번호 등), 경영체등록 DB, 교육이수시간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,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: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

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, 부정수급, 중복수혜,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,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상환완료 후 5년까지

*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,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

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, 지원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고유식별정보의 처리	서명
	□동의 □미동의	

사 업 계 획 서

I . 현황 ※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은 변경할 수 있음(표는 제외)

1. 일반 현황

영 어 규 모 (보유현황)	사업 종류	사업 규모	사업 품목	연간 생산량	연간 생산금액(조수입)
	어선어업				
	양식업				
	종자생산				
	수산가공				
	기 타 업				
재 산 상 태 (백만원)	동 산				
	부 동 산				
	현 금 (저축 포함)				
관련교육이수 실 적	교육 일수 (년월일 부터~까지)	분 야 별	교육 기관	교육 장소	
관련 자격증 취득	자격증명	발급기관		취득일자	
지원받은 정책 자금	사업명		정책자금	백만원	
기타 특기사항					

II. 사업 계획

1. 세부 사업 계획

세부사업내용	단위	단가	사업량	사업비 (천원)			
				계	용자	자담	기타
계							

2.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
3. 사업의 추진 동기, 목표 및 기대 효과

○

4.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

○

5.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·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

○

*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

6. 자금 조달 계획

○

* 창업을 하려는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자금액, 자금확보 방법 등 사업이 실현화 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작성

신 용 조 사 서

1.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전화번호	
대표자 (성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신청사업명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 대 출 자담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최근 3년간 연체사실			최근 3년간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	신용상태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

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		천원		

※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” 에 의함
(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)

4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(조사기준일현재) :

천원

유의사항

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() 수협조합장 (인)

